

## 201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공고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험일시	장 소	시험시간
공개경쟁채용	2017.4.8	제주중앙여자중학교	10:00 ~ 11:40(100분)
경력경쟁채용		제주중앙여자중학교	10:00 ~ 11:00 (60분)

### 2 응시자 준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 간 이후에는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 "마이페이지" 에서 출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응시표 출력기간 :                      월                      금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하기기 바랍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MP3,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사용 또는 소지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자.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차.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체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 3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6호 위반행위

■ 그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의 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4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7. 4. 28.(금)에 있으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http://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7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장 안내

○ 시험장소 : 제주중앙여자중학교(제주시 삼도동 소재)

